

##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              |   |
|------|--------------|---|
| 제정   | 2013. 10. 8  | 조례 제1952호   |
| 일부개정 | 2015. 4. 3   | 조례 제2073호   |
| 일부개정 | 2016. 9. 26  | 조례 제2196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
| 전부개정 | 2017. 12. 29 | 조례 제2322호   |
| 일부개정 | 2020. 3. 25  |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
| 일부개정 | 2022. 8. 2   | 조례 제2868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
| 일부개정 | 2022. 12. 26 | 조례 제2916호(제명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2022.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6>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광명시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종 중,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서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1. 삭제 <2022. 12. 26>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기타 새일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새일센터 업무관련 국장, 여성관련 부서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2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